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·핀테크전략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변남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,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제2조의2제1항)					
판단	□ 문의하신 내용은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					
판단이유	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'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'라 함은					
	○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.					
	□ 국가법령정보 사이트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외부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					
	지		시, 망분리		· · -	2조의2제3항에 따라 용, 정보보호위원회

- *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